

여성농업인 생산활동 지원정책으로서의 농가도우미제도 평가

최윤지 · 김경미 · 이한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A Study on the Farm Helper System for Rural Women

Yoon Ji Choi · Gyung Mee Gim · Han Gi Lee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Summa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evaluat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farm helper system which has been executed by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from the year 2000 as one of the welfare policies for assisting production activities of woman farmers, and 2) to suggest some measures for improving farm helper system.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lected 729 women farmers who utilized the farm helper system. The major findings and suggestion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Women farmers responded that they had positive attitudes toward utilizing farm helper system by answering 'obtaining mental stability'(34.6%), 'reducing a burden of child birth'(29.2%), 'continuing to work on farm activities'(24.4%) and 'trust in national policies'(10.7%). 2) In addition, women farmers wanted to use the helpers for two months, before and after having a child birth. 3) They suggested that farm helpers system should be extended to other areas such as farming(21.5%), nursing(18.6%), and child-caring(16.1%).

Key Words : Rural Women, Woman Farmers, Farm Helper System

I. 서 론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의 전략이 도시화·공업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급격히 낮아지게 되었으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농업·농촌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시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들 중 하나는 광범위한 농촌 노동력의 도시 유출이다. 광범위한 농촌 노동력의 도시 유출에 따른 농업 노동력의 부족 및 농업 노동 인력의 고령화·여성화라는 노동력의 질적 저하라는 문제를 수반하게 되었다. 또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여성화라는 문제

를 농촌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농촌노동력 유출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농업노동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에도 잘 반영되어 농림업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이 49.7%, 농업 주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은 52.5%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0). 우리나라 여성 농업인들은 농업을 지탱하는 중심인력으로서 고된 노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가족농 체제 속에서 참가하고 있기에 무급 가족종사자로 규정되고 있다. 즉 임금 등 노동의 보수가 없고, 임금 근로자 중심의 근로복지제도로부터도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촌의 특성상 자녀 양육 및 교육, 노인부양 등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도 부족해 안정적

인 영농활동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준은 도시 근로여성 및 우리나라 평균 여성복지수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여성농업인만큼 복지제도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 없음에도, 지금까지의 복지는 도시 근로여성에게만 편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박대식, 2000).

여성농업인들은 소득보장, 자녀교육여건, 힘든 농사여건 등을 이농을 고려하는 이유라고 하였다(농림부, 1999). 또한 여성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요건으로는 '가사부담해소, 복지시설확충, 여성용농기계,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교육기회'의 순으로 답하여 여성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교육이나 농업경영교육 등의 전문화 정책에 우선해서 가사 노동환경 개선이나 복지시설 확충 등의 기본적인 농사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전문화 과정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농림부, 1999).

이제는 여성농업인을 복지정책의 주 대상으로 설정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과 배려를 해야만이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농림부가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가도우미제도'는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 정책인 농가도우미제도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농가도우미제도에 대한 여성농업인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둘째, 여성농업인들이 원하는 농가도우미제도의 개선방향을 분석하여 셋째, 농가도우미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복지와 여성복지 서비스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복지(welfare)는 행운,

건강, 행복, 번영 등의 상태로 정의되어 있다. 장인협 외 2인(1999)은 사회복지란 '사회구성원들이 기존의 사회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여성 복지'라는 정의에 대한 시도나 합의에 대한 노력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야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최선희, 1995; 김태진, 1999; 김인숙 외 2000; 조홍식 외 2000). 여성복지와 관련된 이전의 논문들(김영모, 1980; 최은영, 1995)은 용어의 정의에 대한 기초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각기 조금씩 다른 의미로 '여성복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특히 김영모(1980)는 여성복지를 '여성해방운동의 궁극적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여권운동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상태를 여성복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복지를 이념적이고 상징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복지를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설정할 때 그 정의는 실천적 의미에 가깝게 정의되어야 한다. 한국여성개발원(1990)은 여성복지를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기초를 둔 법,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으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실천적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즉 여성복지를 여성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인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성 평등이 실현되는 상태자체라고 보았다.

이후의 김인숙 등(2000)의 연구에서는 여성복지를 성 평등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목적 개념으로서의 여성복지가 아니라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서의 여성복지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

부터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근거한 각종 법, 사회제도를 개헌하는 것 뿐 아니라 여성 개인의 능력을 높임으로써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모든 조직적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이러한 '여성복지'의 정의를 내릴 때 그 강조점을 여성주의 관점에 두느냐, 사회복지의 관점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조홍식 등(2000)은 '여성복지란' 모든 여성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공적·사적 차원에서 행하는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정의에 이어 '여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부장제에 의한 성차별과 그에 근거를 둔 법이나 사회제도, 문화 등의 적극적인 수정과 변화에 대한 노력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여성복지의 실천적 영역은 결국 여성주의의 관점과 깊이 연관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 주었다.

여성복지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여성복지 서비스에 대하여 '여성복지서비스란 모자가정,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자 또는 성매매 여성이 되었을 때 소득, 의료, 고용, 주거, 상담, 자녀보육, 자녀교육 등의 문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박영란 외 2인, 2000).

기존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는 평등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생산자 집단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제으른 빈민'이 아닌 '자활'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 방안이 고려되지 않았다(박대식 2000). 여성농업인들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여성농업인만큼 복지제도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 없음에도 지금까지의 복지는 도시 근로여성에게만 편중되어 있었다(박대식, 2000).

2. 농가도우미제도

1) 농가도우미 유사제도

도우미라는 뜻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우리말로서 현재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도우미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우유 조합에서 실시한 낙농헬퍼제도가 도우미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낙농헬퍼란 소정의 교육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헬퍼 요원이 목장관리를 대행함으로써 낙농업이 안고 있는 특수성을 흡수함과 동시에 가족 중심 낙농경영의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전업농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92년 7월에 경기도 지역 9개소에서 회원 307명, 헬퍼요원 18명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청주우유, 흥성낙협, 경북중앙낙협, 부산우유가 낙농헬퍼제도를 시작하였다.

사업대상 조합은 헬퍼 요원을 조합의 업무구역 등을 감안하여 각 지역별로 배치·운용하거나 이용농가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배치·운용하고 있다. 헬퍼요원 자격으로는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축산 및 낙농 관련 전공자 또는 조합지도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 또는 신규채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선발된 헬퍼는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자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추후에도 정기적인 보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낙농헬퍼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헬퍼 이용시기가 집중되어 헬퍼 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헬퍼 요원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문제. 셋째, 헬퍼이용료 부담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낙농가가 많고, 헬퍼사업 조합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것이다. 넷째, 안정적인 헬퍼요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마지막으로 헬퍼사업 관련의 통일된 지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2) 외국의 농가도우미제도

주요 외국의 경우 농업현장에서 다양한 도우미를 활용하여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농가도우미를 취업이나 일의 성격별로 분류하여 보면 전문도우미와 임시 도우미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도우미 공급처별로 분류하여 보면 사회보험급여 도우미(의료보험 급여 도우미, 농업노동사고 보험 급여도우미, 연금급여도우미)와 농업인 지원정책에 의한 도우미(영농, 가사, 농가도우미)로 분류 할 수 있다.

도우미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농가도우미제도가 노령농민 보조법(농민연금법)에서 먼저 도입되었는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시행한 급속한 산업개발정책으로 인하여 농가 인구가 크게 감소해 농업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상황과 농업구조개선정책 추진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농업경영을 포기하였으나 기술과 노동능력이 있는 노령농업인 문제와 농가 경영주의 사고 등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일본의 농가도우미제도는 낙농헬퍼 제도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러한 낙농 도우미제도는 노동력 교환으로 서로 돋는 전통 품앗이 조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주요 외국의 농가도우미제도가 간략하게 비교한 결과이다. 첫째, 농가도우미제도의 시행주체는 대체로 협동조합이나 민간단체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농가도우미제도의 시행주체가 미국은 민간단체 또는 소규모 회사이고, 덴마크는 농업자단체 연합위원회 또는 독립단체이며, 프랑스는 농업자조합 또는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일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도우미제도의 시행주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용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독일은 경영주와 배우자, 룩셈부르크는 회원 가족, 네덜란드는 단체회원들에게만 도우미 이용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시기는 질병, 출산, 경조사, 재해 등과 같은 부정기적인 서비스에서 주말 휴식 및 정기휴가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우미의 서비스시기의 제한이 계속 완화되고 있다.

넷째, 도우미의 서비스내용이 나라마다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농작업만 서비스를 받는 국가는 미국, 덴마크, 그리고 프랑스 등이고 농작업과 가사를 함께 서비스를 받는 국가는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도우미 서비스내용에 제한이 없는데 농작업은 민간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는 낙농 관련 농작업을 중심으로 도우미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2000년 4월에 간호보험이 실시되면 간병, 가사분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으로 있다.

다섯째, 농가도우미제도에 대한 정부지원이 제도의 활성화 여부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농가도우미제도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보조금)을 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의 경우, 농가도우미제도가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으나 1981년부터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도우미제도에 대한 덴마크의 정부 보조금제도로는 병, 사고, 출산 등의 경우에 대한 헬퍼이용료 보조, 농업인의 교육·연수 참가시 보조, 헬퍼 요원의 교육 및 연수에 대한 보조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에 낙농헬퍼 원활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70억엔의 기금을 출연함으로써 낙농헬퍼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가도우미제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별로 없는 국가로는 미국, 아일랜드,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농가도우미제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없는 이 국가들에서는 농가도우미제도가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외국의 농가도우미제도 비교

국 가	시행주체	이용 자격	서비스시기	서비스내용	기 타
독일	정부, 민간 서비스단체 (교회, 조합, 복지센터)	경영주 와 배우자	질병, 출산, 사고, 사망 등 긴급수 요시와 휴가, 교 육, 훈련시	농작업, 가사	- 질병 보험급여로 임신출산과 질병 요 양시 3개월까지 - 경영주 사망시는 6개월까지 지원교육, 훈련, 휴가는 3주까지
미국	민간단체, 소규모회사	제한 없음	휴가, 경조사, 질병 등	농작업	- Farm Sitter Service (휴가시 농장을 돌보아 줌)
덴마크	농업자단체 연합위원회, 독립단체	제한 없음	질병, 출산, 훈련, 휴가	농작업	- 회원출자 + 정부보조 - 대행작업원 자격증제도
프랑스	농업자조합, 비농업자는 회사 형태	제한 없음	출산, 훈련참가 등	농작업	- 사회보장제도와 연계 - 임신시 대행료 전액 정부보조
아일 랜드	협동조합	제한 없음	농번기 파업작업, 질병, 휴가, 출산	농작업, 가사	- 농가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거의 이용 하지 않고 비농가에서 주로 이용
룩셈 부르크	농업인단체 '노동교환과 상호부조 서클'	회원 가족	질병, 사망, 재해, 입원, 출산, 과도 한 작업부담	농작업, 가사 (단, 농작업 없이 가사만은 불가능)	- 단체운영자금 일부 정부지원
네델 란드	대행서비스 전국조직	단체 회원	질병, 재해, 휴가, 훈련 등	농작업, 가사	- 농업헬퍼는 단순 노동자, 콤비 워크, 헬 퍼, 숙련 헬퍼, 농장 관리자로 구분함 - 질병, 재해 등의 경우 정부 보조 - 헬퍼에 대한 농업훈련 실시
영국	민간단체	제한 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대행료가 비쌈 - 지방자치단체가 가사부조서비스에 대 한 법적 책임있으나 주로 환자, 신체장 애자, 고령자 등을 위한 것임
일본	협동조합 민간단체	제한 없음	제한없음	낙농 관련 농작업	- 도우미 상병시 이용 원활화 특별대책, 2000년 4월 간호보험 실시 예정(간병, 가사분야), 헬퍼를 위한 보험제도 -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낙농헬퍼전 국협회의 기금을 조성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재구성)

III.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00년도에 농가도우미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65개 시·군 여성농업인 729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각 시·군 행정단위(시·군 산업계)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농가도우미제도를 담당한 행정담당자들을 통하여 설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80.1%이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여성농업인들의 가족구성은 대가족(노부모-부부-자녀) 형태인 경우가 54.6% 이었으며,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들의 학력수준은 71.3%가 고졸이었으며, 영농경력은 5년 이하인 경우가 54.6%이었고 영농참여정도는 일부 거들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 가입사항을 살펴보면 부녀회에 가

입하고 있는 경우가 32.4%로 현재 농촌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가입한 단체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6.3%로 나타나 농가도우미를 활용한 여성농업인들의 경우 여성단체 가입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형태를 살펴보면 '벼농사'라고 한 경우가 40.3%로 가장 많았고 농외소득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없는 경우가 93.5%로 대부분의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소

<표 2>

여성농업인의 일반사항

구 분		N (%)	구 분	N (%)
가족구성 (N=571)	노부모-부부-자녀	312 (54.6)	영농경력 (N=562)	1 ~ 5년 6 ~ 10년 11 ~ 15년 16 ~ 20년 21년 이상
	부부 - 자녀	259 (45.4)		307 (54.6) 179 (31.9) 47 (8.4) 19 (3.4) 10 (1.9)
자녀수 (N=577)	1명	146 (25.3)	영농참여 정도 (N=576)	주로 혼자 일부 거둠 현재는 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았음
	2명	269 (46.6)		76 (13.2) 463 (80.4) 26 (4.5) 11 (1.9)
	3명	129 (22.4)		
	4명	20 (3.5)		
	5명	13 (2.3)		
학력 (N=574)	무학	3 (0.5)	여성단체* 가입현황 (N=614)	생활개선회 부녀회 주부대학 자원활동단체 종교단체 여성농업인단체 없음 기타
	초등졸	20 (3.5)		36 (5.9) 199 (32.4) 21 (3.4) 14 (2.3) 30 (4.9) 24 (3.9) 284 (46.3) 6 (1.0)
	중등졸	77 (13.4)		
	고등졸	409 (71.3)		
	전문대학	44 (7.1)		
	대학이상	24 (4.2)		
나이 (N=555)	19~25	55 (9.9)	영농형태 (N=573)	벼농사 밭농사 시설원예 과수 축산 기타
	26~35	382 (68.8)		236 (40.3) 131 (22.9) 100 (17.5) 57 (9.9) 37 (6.5) 12 (2.1)
	36~45	110 (19.8)		
	46~49	8 (1.4)		
소득규모 (N=559)	500만 원 이하	59 (10.6)	농외소득 (N=565)	예 아니오
	501 ~ 1000	154 (27.5)		37 (6.5) 528 (93.5)
	1001 ~ 2000	207 (37.0)	농외소득 유형 (N=30)	
	2001 ~ 3000	87 (15.6)		7 (23.3)
	3001 ~ 4000	31 (5.5)		14 (46.7)
	4001 ~ 5000	7 (1.3)		
	5001 원 이상	14 (2.5)		9 (24.3)

* : 복수응답 문항임

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외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유형을 살펴보면 자영업이 46.7%로 가장 많았다.

IV. 연구 결과

1. 농가도우미 이용 상황

여성농업인들이 농가도우미를 주로 활용한 시기는 10월이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일수는 21~30일(84.4%)이 가장 많았다. 농가도우미의 인적구성을 보면 이웃이 72.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사고 또는 외출시 주로 이웃(47.9%)에게 부탁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제도에 대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홍보 및 전달매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면사무소(42.7%), 이장(27.2%), 이웃(10.9%)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농가도우미를 활용하기로 사용을 결정한 사람은 여성농업인 자신(57.8%)이라고 응답하여 스스로 결정한 경우가 많았다.

2. 농가도우미 제도평가

농가도우미제도에 대한 여성농업인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여성농업인들의 농가도우미제도 만족도는 84.3%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농가도우미제도를 이웃 등에게 권장하겠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가 72.9%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농가도우미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효과로는 ‘심리적 안정’이 34.6%, ‘출산부담을 덜어 주었다’가 29.2%, ‘농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24.4%,

<표 3> 농가 도우미 이용 상황

구 분		N(%)	구 분		N(%)
이용시기 (N=554)	1월	10 (1.8)	홍보 및 전달매체 (N = 581)	방송	9 (1.6)
	2	12 (2.2)		면사무소	247 (42.7)
	3	37 (6.7)		이장	157 (27.2)
	4	28 (5.1)		이웃	63 (10.9)
	5	32 (5.8)		농업기술센터	13 (2.2)
	6	28 (5.0)		홍보용 안내문	34 (5.9)
	7	31 (5.6)		신문	22 (3.8)
	8	64 (11.6)		가족·친척	29 (5.0)
	9	83 (18.0)		농협	4 (0.7)
	10	128 (23.1)		기타	3 (0.5)
	11	79 (14.3)			
	12	22 (4.0)			
농가 도우미* 인적구성 (N=619)	가족	15 (2.4)	이용일수 (N = 559)	1~10일	16 (2.9)
	친척	67 (11.6)		11~20일	24 (4.3)
	이웃	417 (72.1)		21~30일	472 (84.4)
	작목반	24 (4.2)		31~90일	47 (8.4)
	소개	20 (3.5)	사용결정권자 (N = 580)	본인	335 (57.8)
	알고 지내던 사람	69 (11.9)		남편	212 (36.6)
	기타	7 (1.2)		기타	30 (5.2)
				본인과 남편	2 (0.3)
				시부모	1 (0.2)

* : 복수응답 문항임

‘국가정책에 대해 신뢰가 생겼다’가 10.7%로 나타났다. 한편 농가도우미제도에 대한 불만족하는 원인으로는 ‘이용기간이 짧다’가 37.4%, ‘도우미를 구하기가 어렵다’가 24.5%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농가도우미의 노임수준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여성노임과 비교 할 경우 ‘같다’는 경우가 45.9%로 나타났다.

3. 농가도우미 활용시 문제상황 발생과 해결

농가도우미를 활용하는 동안 사건이나 사고의 발생 여부에 대해 26명(4.5%)만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유형으로는 ‘도우미가 다쳤다’는 경우가

31.6%로 가장 많았고 손해정도는 거의 없었다는 응답이 76.9%로 나타났으며 손해의 해결은 주로 농가도우미가 부담(58.8%)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농가도우미 제도의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

여성농업인들에게 농가도우미제도의 개선방안과 건의사항 등을 질의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여성농업인들의 57.3%가 농가도우미를 ‘출산 전·후 중 2개월’ 정도를 활용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금 비중은 80-100%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고, 농가도우미가 가장 필요한 경우로는 출산과 산전·후(34.4%) > 사고·병(30.9%) > 예상치 못한 일(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

<표 4> 농가도우미 제도 평가

구 분		N (%)	구 분		N (%)
만족도 (N = 572)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함	482 (84.3) 90 (15.7)	권장 (N = 575)	이용기간 짧음 도우미 구하기 어려움	52 (37.4) 34 (24.5)
사용효과 (N = 578)	적극적	419 (72.9)		지원금지급 늦음 절차 까다로움	18 (12.9) 21 (15.1)
	약간	103 (17.9)		노임이 비쌈 일을 잘 못함	7 (5.0) 4 (2.9)
	그저그럼	34 (5.9)		담당자 불친절	0 (0)
	별로	16 (2.8)		기타	3 (2.2)
	전혀	3 (0.5)	노임수준 (N = 585)	같다	264 (45.9)
심리적 안정 출산부담 덜어줌 농업의 계속성 국가정책 신뢰 기타		200 (34.6) 169 (29.2) 141 (24.4) 62 (10.7) 6 (1.0)		싸다	160 (27.8)
				비싸다	60 (10.4)
				잘 모름	91 (15.8)

* : 복수응답 문항임

<표 5> 문제상황 발생과 해결

구 分		N (%)	구 分		N (%)
사건사고 발생 (N = 574)	발생 하였음	26 (4.5)	손해정도 (N = 24)	경제적·심리적 손해 심리적 손해 거의 없음	3 (11.5) 3 (11.5) 20 (76.9)
	발생하지 않음	548 (95.5)		도우미가 부담 이용자가 부담 반반	10 (58.8) 5 (29.4) 2 (11.8)
사고유형 (N = 19)	도우미가 다침 기계를 파손 시설, 동식물에 피해 기타	6 (31.6) 2 (10.5) 1 (5.3) 10 (52.6)	손해해결 (N = 17)		

〈표 6〉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

구 분		N (%)	구 분	N (%)	
시기 (N=583)	출산전·후 2개월	334 (57.3)	농가도우미가* 가장 필요한 경우 (N=1620)	출산, 산전, 산후	557 (34.4)
	출산후 1개월	89 (15.3)		사고, 병	500 (30.9)
	출산후 2개월	89 (15.3)		예상치 못한 일	311 (19.2)
	출산전·후 1개월	49 (8.4)		영농교육 및 훈련	106 (6.5)
	기타	22 (3.8)		관혼상제	112 (6.9)
지원금 비중 (N=580)	0~ 19%	11 (1.9)	사용희망* 농가도우미 유형 (N=1563)	주말, 휴일	21 (1.3)
	20~ 39	23 (4.9)		회의 참석	10 (0.6)
	40~ 59	74 (12.8)		기타	3 (0.2)
	60~ 79	130 (22.4)			
	80~100	342 (59.0)			
이용료* 차등 (N=1040)	힘들 정도	281 (27.0)	행정기관 선호도 (N=579)	출산도우미	411 (26.3)
	전문성 정도	165 (15.9)		일반 영농도우미	336 (21.5)
	차등두면 안됨	162 (15.6)		간병도우미	291 (18.6)
	성별	181 (17.4)		보육도우미	252 (16.1)
	숙련성 정도	139 (13.4)		가사도우미	140 (9.0)
	연령	74 (7.1)		전문 영농도우미	129 (8.3)
	이용농가자산	28 (2.7)		사용 안함	4 (0.3)
	도우미 학력	3 (0.3)			
	기타	7 (0.7)			
사건, 사고 해결 (N=576)	보험제도	239 (41.5)	회비 (N=579)	읍·면사무소	255 (44.0)
	공체제도	131 (22.7)		농업기술센터	112 (19.3)
	이용자+정부	125 (21.7)		생활개선회	76 (13.1)
	이용자+도우미	53 (9.2)		협동조합	58 (10.0)
	이용자	16 (2.8)		부녀회	40 (6.9)
	기타	12 (2.1)		잘 모르겠음	36 (6.2)
전업 농가도우미 사용여부 (N=582)	내겠다	137 (23.7)			
	내지 않겠다	194 (33.5)			
	잘 모르겠다	248 (42.8)			
	예	127 (23.3)			
	아니오	419 (76.7)			
농가도우미 보험제도 (N=583)	가까운 농업인	367 (63.1)	서류제출 또는 신청시 불편사항 (N=546)	영농일지	69 (57.5)
	전문도우미	117 (20.1)		이용신청서	13 (10.8)
	경우에 따라 다름	91 (15.6)		이용계약서	8 (6.7)
	잘 모름	7 (1.2)		보조금신청서	8 (6.7)
	필요하면 이용함	319 (54.7)		출산확인서	10 (8.3)
	별로 이용않음	99 (17.0)		이장의 확인	3 (2.5)
	적극적으로 이용	59 (10.1)	서류불편사항 (N=127)	기타	9 (7.5)
	그저 그럼	63 (10.8)			
	전혀 이용않음	43 (7.4)			

*: 복수응답 문항임.

하기를 희망하는 도우미 유형을 살펴보면 출산도우미(26.3%) > 일반영농도우미(21.5%) > 간병도우미(18.6%) > 보육도우미(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이용료에 차등을 둘 경우 그 기준으로는 일의 힘든 정도(27.0%)를 들었으며 농가도우미를 담당할 행정기관으로는 거리가 가까운 읍·면사무소(44.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도우미 활용시 사건과 사고의 해결 방법에 대하여는 41.5%가 ‘보험제도’를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었으며, 농가도우미제도를 ‘회원제’로 운영할 경우 회비를 납부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23.7%로 낮게 나타났으나 농가도우미 제도를 보험제도화 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54.7%가 필요하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에게 농가도우미를 전업으로

하는 ‘전업 농가도우미’를 활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가까운 농업인을 활용하겠다’는 경우가 63.1%로 나타나 전업 농가도우미에 대한 선호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도우미제도를 활용하고자 신청하는 단계에서 서류제출이나 불편사항 유무에 대해서는 76.7%가 ‘없었다’라고 응답하였으나, 불편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농일지 기록(57.5%)’에 대한 불편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농가도우미제도의 발전방향

농가도우미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여성농업인들의 응답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정부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5.2%가, 홍보는

<표 7> 농가도우미제도 발전방향

구 분		N (%)	구 분		N (%)
정부지원금 (N = 558)	아주 필요함	209 (37.5)	농가도우미 알선 (N = 556)	아주 필요함	176 (31.7)
	필요함	266 (47.7)		필요함	246 (44.2)
	그저 그림	73 (13.1)		그저 그림	59 (10.6)
	필요하지 않음	8 (1.4)		필요하지 않음	56 (10.1)
	전혀 필요하지 않음	2 (0.4)		전혀 필요하지 않음	19 (3.4)
홍 보 (N = 565)	아주 필요함	248 (43.9)	사고시 보상 (N = 563)	아주 필요함	239 (42.5)
	필요함	261 (46.2)		필요함	299 (53.1)
	그저 그림	50 (8.8)		그저 그림	16 (2.8)
	필요하지 않음	5 (0.9)		필요하지 않음	6 (1.1)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0.2)		전혀 필요하지 않음	3 (0.5)
교 육 (N = 553)	아주 필요함	86 (15.6)	전문적인 운영기관 (N = 556)	아주 필요함	137 (24.6)
	필요함	221 (40.0)		필요함	229 (41.2)
	그저 그림	110 (19.9)		그저 그림	96 (17.3)
	필요하지 않음	118 (21.3)		필요하지 않음	83 (14.9)
	전혀 필요하지 않음	18 (3.3)		전혀 필요하지 않음	11 (2.0)
	행정인력 서비스 강화 (N = 562)	아주 필요함 필요함 그저 그림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아주 필요함	184 (32.7)
				필요함	264 (47.0)
				그저 그림	75 (13.3)
				필요하지 않음	38 (6.8)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0.2)

90.1%, 농가도우미 교육은 55.6%, 농가도우미 알선은 75.9%, 사고 발생시 보상은 95.6%, 농가도우미제도 관련 전문적인 운영기관의 필요성은 65.8%, 행정담당자들의 서비스 강화에 대하여는 79.7%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농업 및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의 주요 인력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 여성농업인 노동력은 농업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핵가족 농가나 가족농 구조하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노동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기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설과 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으며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2000년도에 시작하여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가도우미제도는 이러한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외국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지원정책이 있는 국가의 경우 도우미제도가 잘 정착되고 발전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뒷받침될 때만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제도의 변화 발전된 정착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농가도우미제도와 같은 여성농업인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가도우미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가도우미 이용기간을 출산 전·후 2개월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근로 여성의 출산휴가가 2001년 11월 1일자로 3개월로 확대 시행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30일은 짧은 기간이며,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현재 농촌거주 여성들의 가임 기간 및 신규유입 인구의 비중과 여성농업인들의 활용하고 싶어 하는 농가도우미 유형 등을 종합해 볼 때 여성농업인들은 농가도우미제도가 출산 만이 아니라 간병, 보육, 가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시행되길 희망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출산의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경영주의 사망, 질병 등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한다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농촌정착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여성농업인이 출산 이외 질병, 상해(농작업관련) 등으로 인해 장기간 농업활동에 장기간 종사 하지 못할 경우

영농도우미

- 농촌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와병노인, 장기투병노인 증가

간병도우미

- 농촌은 24개월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전무하므로 보육으로 인한 농업 생산 차질 초래
- 여성농업인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시 영·유아 보육인 필요함

보육도우미

- 여성농업인이 상해, 질병 등으로 가정내 활동이 어려울 경우 이를 지원해줄 인력 필요함

가사도우미

셋째, 농가도우미 활용기간 동안의 사건·사고로 농가도우미가 다치거나 농가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는 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고,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업 상해 공제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농가도우미제도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신청절차상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즉 농업인들은 영농일지 작성에 대하여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농가도우미 인력을 알선하고 양성하는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군에서는 품괄이 농업노동을 하는 농업인이나 은퇴농에 대한 인력을 DB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VII. 참 고 문 헌

1. 김영모, 1980, 한국인의 복지의식, 일조각
2. 김인숙·김혜선·성정현·신은주·윤영숙·이혜경·최선희, 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3. 김태진, 1999, 여성복지론, 사회복지개발연구원
4. 농림부, 1999,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일경제사업연구원
5. 박대식·정명채·허장, 2000, 노령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생산적 복지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박영란·황정임·정재훈, 2000, 외국의 여성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7. 장인협·이혜경·오정수, 1999,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8. 조홍식·김혜련·신혜섭·김혜란, 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9. 조홍식, 2000, 국내 농어촌 농어민 복지문제, 보험이냐, 보장이냐, 농민과 사회(24), pp. 12-23.
10. 최선희, 1995, 여성복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25), pp. 189-208.
11. 최은영, 1995, 여성복지부문 평가 및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동풍
12. 한국농어민신문, 2001. 3. 22.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
14. 통계청, 2000, 농림업주요통계
15. 통계청, 2001, 2000 농업총조사 잠정보고서
16. Greet, Overbeek., Sophia, Efstratoglou., Marit, S. Haugen, Elena Saraceno, 1998, Labor situation and startegies of farm women in diversified rural areas of EUROPE executive summary, Centre for Rural Research Institute
(2005년 10월 8일 접수, 심사 후 수정 보완)